

대전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단23987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3. C
4. D

변 론 종 결 2024. 1. 31.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94,946,206원 및 그 중 280,288,109원에 대하여 2023. 7. 24.부터 2023. 9. 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22. 9.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9. 27. 접수 제362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2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8. 접수 제818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피고 D 사이에 2022. 12.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 12. 29. 접수 제106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 1) 원고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2018. 11. 23.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9. 11. 22.까지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3. 2. 17. 대출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위 원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 4) 원고는 2023. 7. 24. 피고 A를 대위하여 E은행에 280,288,109원(=원금 270,000,000원+이자 10,288,109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하여 미수위약금이 1,961,750원,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이 12,696,347원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23. 7. 24.부터 연 8%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 1) 피고 A는 2022. 9.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27.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2) 피고 A는 2022. 11. 8.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3) 피고 A는 2022. 12. 29.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피고 A,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294,946,206원(=대위변제금 280,288,109원+위약금 1,961,750원+대지급금 12,696,34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80,288,1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9.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A가 피고 B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2. 9. 26.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가 E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을 2023. 2. 20.부터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3. 7. 24.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고 A의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유일하고, 그 가액이 4,905,453,9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 F조합에 대한 대출금 2,978,000,000원, E은행에 대한 대출금 270,000,000원, G은행에 대한 대출금 150,000,000원,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1,403,593,278원, H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한 공사대금 1,641,2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I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신축공사 중 각종 설비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인데, 피고 A가 2022. 4. 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로부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 2021. 1. 15. 주식회사 I과 체결한 위 도급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채무이고, 2023. 5. 15.경 공사대금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속적 거래를 위한 담보제공인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느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는 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가 담보를 제공하고라도 피고 B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갹생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 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갹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을나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가 2022. 5. 17. 피고 A에 그 배합사료 또는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직거래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 A는 2022. 5. 30.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1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채무자(발행인) 피고 A 및 채권자(수취인) 피고 B의 대리인을 K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L에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전에 피고 A가 피고 B에 대하여 1,442,900,648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였는데, 위 기존의 물품대금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 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로 피고 B는 피고 A에 2022. 9. 30.까지 10,692,630원, 2022. 10. 31.까지 3,023,280원 상당의 사료공급을 하였고 이후로 사료거래가 중단된 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거래규모는 채권최고액의 0.8%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A가 피고 B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A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매매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C, D은 피고 A에 그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효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동구 공장용지 1398㎡2. 대전광역시 동구 , ,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층 811.18㎡

2층 811.18㎡

3층 198.236㎡

